

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제3호 중 “자원재활용 실행계획”을 “자원순환 집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 중 “자원재활용 실행계획”를 “자원순환 집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제2호 중 “법 제15조제1항”을 “법 제12조의3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“삭제” 한다.

제9조를 “삭제” 한다.

제10조를 “삭제” 한다.

제11조를 “삭제” 한다.

제12조를 “삭제”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과태료처분통지서를 “삭제”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 과태료납부통지서를 “삭제”한다.

[별지 제3호 서식] 과태료납부독촉장을 “삭제”한다.

[별지 제4호 서식] 과태료부과취소(변경)통지서를 “삭제”한다.

[별지 제5호 서식] 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를 “삭제”한다.

[별지 제6호 서식]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를 “삭제”한다.

[별지 제7호 서식] 과태료수납부를 “삭제”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제2항 제3호 <u>자원재활용 실행계획</u> 의 수립 및 시행	제2조(구청장의 책무) ----- -- <u>자원순환 집행계획</u> ----- -----
제6조(보고 및 검사 등) 제1항 제2호 <u>법 제15조제1항</u> 에 따른 일반폐기물배출자	제6조(보고 및 검사 등) ----- ----- <u>법 제12조의3</u> ----- -----
제7조(과태료 부과 · 징수 등)	<삭 제>
제9조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)	<삭 제>
제10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 · 관리)	<삭 제>
제11조(준용규정)	<삭 제>
제12조(과태료 귀속)	<삭 제>
[별지 제1호 서식] 과태료처분통지서	<삭 제>
[별지 제2호 서식] 과태료납부통지서	<삭 제>
[별지 제3호 서식] 과태료납부독촉장	<삭 제>
[별지 제4호 서식] 과태료부과취소(변경)통지서	<삭 제>
[별지 제5호 서식] 과태료처분에대한 불복사유	<삭 제>
[별지 제6호 서식]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제기통보서	<삭 제>
[별지 제7호 서식] 과태료수납부	<삭 제>